

용인시 읍·면·동 지도담당 규정

제정	2005. 10. 5	훈령	제211호
개정	2005. 10. 13	훈령	제240호
	2006. 12. 29	훈령	제248호
	2007. 7. 1	훈령	제261호
	2008. 12. 29	훈령	제277호
	2009. 6. 26	훈령	제286호
	2009. 12. 29	훈령	제293호
	2010. 8. 2	훈령	제302호
	2010. 12. 17	훈령	제312호
일부개정	2011. 7. 18	훈령	제322호
일부개정	2013. 3. 8	훈령	제345호
일부개정	2013. 12. 2	훈령	제356호
일부개정	2014. 10. 8	훈령	제377호
일부개정	2016. 7. 22	훈령	제402호
일부개정	2017. 5. 10	훈령	제415호
일부개정	2017. 10. 2	훈령	제418호(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일부개정	2017. 12. 18	훈령	제423호(구 및 읍·면·동 순서 규정)
일부개정	2018. 10. 16	훈령	제435호(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일부개정	2019. 7. 1	훈령	제452호(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일부개정	2019. 12. 23	훈령	제462호
일부개정	2020. 12. 23	훈령	제479호
일부개정	2021. 2. 24	훈령	제481호
일부개정	2021. 6. 30	훈령	제493호

제1조(목적) 용인시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과장 및 구의 과장으로 하여금 읍·면·동을 담당하게 하여 읍·면·동 행정을 종합지도·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과 책임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8, 2017. 5. 10, 2019. 12. 23>

제2조(담당) 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 담당관·과장의 담당 읍·면·동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3. 8, 2017. 5. 10, 2019. 12. 23>

② 구의 과장의 담당 읍·면·동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지도) 읍·면·동 지도담당으로 지정된 자(이하 “읍·면·동 지도담당”이라 한다)은 일제 지도가 필요한 공통적인 사항과 용인시장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출장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2, 2019. 12. 23>

제4조(복명 및 건의) 읍·면·동 지도담당은 제3조의 지도결과를 직접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 문제점을 개선할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3〉

제5조(읍·면·동장 협조) 읍·면·동장은 읍·면·동 행정전반에 대하여 읍·면·동 지도담당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담당 읍·면·동 지원) 읍·면·동 지도담당은 담당 읍·면·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담당 읍·면·동장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부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훈령)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읍·면·동 지도담당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 10. 13 훈령 제24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훈령 제24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1 훈령 제26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훈령 제27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26 훈령 제28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29 훈령 제29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훈령 제30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훈령 제31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8 훈령 제32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8 훈령 제34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 훈령 제356호>

이 규정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8 훈령 제37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22 훈령 제402호>

이 규정은 발령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0 훈령 제415호>

이 규정은 발령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 훈령 제4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용인시 읍·면·동 지도담당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실·국장란 중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7. 12. 18 훈령 제423호, 구 및 읍·면·동 순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읍·면·동 지도담당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획재정국장의 담당읍면동 중 “모현면”을 “모현읍”으로 하고, 투자산업국장의 담당읍면동 중 “남사면, 이동면”을 “이동읍, 남사면”으로 한다.

별표 2 중 “모현면”을 “모현읍”으로 하고, 모현읍란(당초의 모현면란) 다음에 이동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동읍	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과장
-----	----------------

별표 2 중 이동면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모현면”을 “모현읍”으로 하고, 모현읍란(당초의 모현면란) 다음에 이동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동읍	세무과장
-----	------

별표 3 중 이동면란을 삭제한다.

부칙 <2018. 10. 16 훈령 제435호,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용인시 읍·면·동 지도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실·국장란 중 “행정혁신실장”을 “자치행정실장”으로,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투자산업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도시균형발전실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안전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처인구 포곡읍의 담당과장(관,담당관,단장)란 중 “정책기획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구 이동읍의 담당과장(관,담당관,단장)란 중 “투자유치과장”을 “동물보호과장”으로 하며, 기흥구 구갈동의 담당과장(관,담당관,단장)란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자치협력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하고, 수지구 풍덕천1동의 담당과장(관,담당관,단장)란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구 풍덕천2동의 담당과장(관,담당관,단장)란 중 “균형발전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같은 구 신봉동의 담당과장(관,담당관,단장)란 중 “시민안전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구 상현2동의 담당과장(관,담당관,단장)란 중 “정수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구 성북동의 담당과장(관,담당관,단장)란 중 “공원녹지과장”을 “도시철도와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처인구 중앙동의 담당과장란 중 “공원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

장”으로 한다.

부칙 <2019. 7. 1 훈령 제452호, 행정기구의 직제순위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용인시 읍·면·동 지도담당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일자리산업국장의 담당읍면동란 중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을 “양지면”으로 하고, 교통건설국장의 담당읍면동란 중 “상현2동, 보정동”을 “상현2동”으로 하며, 교통건설국장란 다음에 미래산업추진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미래산업추진단	원삼면, 백암면, 보정동
---------	---------------

별표 2의 남사면의 담당과장(관, 담당관, 단장)란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법무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하고, 원삼면의 담당과장(관, 담당관, 단장)란 중 “법무담당관, 농업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반도체산단과장”으로 하며, 백암면의 담당과장(관, 담당관, 단장)란 중 “축산과장”을 “축산과장, 산단입지과장”으로 하고, 양지면의 담당과장(관, 담당관, 단장)란 중 “산림과장”을 “시민소통관, 산림과장”으로 하며, 역삼동의 담당과장(관, 담당관, 단장)란 중 “공보관”을 “공보관, 청년담당관”으로 하고, 영덕동의 담당과장(관, 담당관, 단장)란 중 “노인복지과장”을 “인사관리과장, 노인복지과장”으로 하며, 보정동의 담당과장(관, 담당관, 단장)란 중 “하천과장”을 “생태하천과장, 플랫폼시티과장”으로 하고, 풍덕천1동의 담당과장(관, 담당관, 단장)란 중 “도시정책과장”을 “징수과장, 도시정책과장”으로 하며, 풍덕천2동의 담당과장(관, 담당관, 단장)란 중 “도시개발과장”을 “평생교육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9. 12. 23 훈령 제46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3 훈령 제479호>

용인시 읍·면·동 지도담당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24 훈령 제48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30 훈령 제49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6. 30〉

읍·면·동 지도담당(제2조제1항 관련)

□ 시 본청 실·국장

실·국장	담당 읍·면·동
자치행정실장	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남사읍
재정국장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교육문화국장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동부동, 신갈동
복지여성국장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일자리산업국장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도시정책실장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동백3동
주택국장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교통건설국장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죽전3동, 동천동
미래산업추진단	상현1동, 상현2동, 상현3동, 성북동

[별표 2] <개정 2021. 6. 30>

읍·면·동 지도담당(제2조제1항 관련)

☐ 시 본청 담당관·과장

처인구	담당관·과장	기흥구	담당관·과장	수지구	담당관·과장
포곡읍	시민소통관, 감사관	신갈동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풍덕천1동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모현읍	공보관, 정책기획관	영덕1동	체육진흥과, 관광과	풍덕천2동	주택과, 주택관리과
이동읍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영덕2동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신봉동	건축과, 공공건축과
남사읍	행정과, 자치분권과	구갈동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죽전1동	교통정책과
원삼면	인사관리과, 정보통신과	상갈동	아동보육과, 일자리정책과	죽전2동	대중교통과
백암면	민원여권과	보라동	지역경제과	죽전3동	도시철도과
양지면	예산과	기흥동	기업지원과	동천동	건설정책과, 도로관리과
중앙동	회계과	서농동	농업정책과	상현1동	생태하천과
역북동	재산관리과	구성동	축산과	상현2동	반도체산단과
삼가동	세정과	마북동	산림과	상현3동	산단입지과
유림동	징수과	동백1동	동물보호과	성북동	플랫폼시티과
동부동	교육청소년과	동백2동	도시기획단		
		동백3동	시민안전관		
		상하동	도시정책과		
		보정동	도시개발과		

[별표 3] 〈개정 2021. 6. 30〉

읍·면·동 지도담당(제2조제2항 관련)

□ 구의 과장

치인구	담당 과장	기흥구	담당 과장	수지구	담당 과장
포곡읍	자치행정과	신갈동	자치행정과	풍덕천1동	자치행정과
모현읍	민원지적과	영덕1동	자치행정과	풍덕천2동	자치행정과
이동읍	세무1과, 세무2과	영덕2동	민원지적과	신봉동	민원지적과
남사읍	사회복지과	구갈동	민원지적과	죽전1동	세무과
원삼면	산업과	상갈동	세무과	죽전2동	세무과
백암면	환경위생과	보라동	세무과	죽전3동	사회복지과
양지면	교통과	기흥동	사회복지과	동천동	산업환경과
중앙동	도시미관과	서농동	가정복지과	상현1동	교통과
역북동	건설과	구성동	산업환경과	상현2동	도시미관과
삼가동	도로과	마북동	교통과	상현3동	건설도로과
유림동	건축허가1과	동백1동	도시미관과	성북동	건축허가과
동부동	건축허가2과	동백2동	건설과		
		동백3동	도로과		
		상하동	건축허가1과		
		보정동	건축허가2과		